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 4. 27 선고 2021가단11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피고(선정 당사자) B

변론 종결 2021. 4. 20

판결 선고 2021. 4. 2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경남 창원군 C 임야 36,694㎡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사이의 2020. 12. 11.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선정당사자) 와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녕등기소 2020 . 12. 11. 접수 제 19591호로 마친 매매예약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은 이 사건 임야를 1/4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20. 12. 7.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을 상대로 이 법원 2020 가단 1914호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했다.

다.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은 2020. 12. 11. 선정자 F와 이 사건 임야 중 3/4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했고, 선정자 F는 같은 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증, 을 제 1, 2,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선정당사자) 와 선정자들은 원고가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한 후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이다.

따라서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편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사해 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피고 적격이 있고 채무자에게는 피고적격이 없으므로(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2394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에 대한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선정자 F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 위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자취소소송은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2003다19558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 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 F는 2021. 1. 28.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과 이 사건 매매예약을 합의해지하고,같은 날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선정자 F에 대한 소는 권리 보호의 이익이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박이랑

별지